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19. 8. 23. (금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최경분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서 동 학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19년 8월 13일

○ 회부일자: 2019년 8월 14일

3. 제정이유

- 충청북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기금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2017.10.24. 개정된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 재원을 적절히 조절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에 따른 비효율적 운영을 방지함으로써,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-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의 존속기간(2023년 12월 31일까지) 및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함
- 기금 조성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,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,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-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계획 및 기금 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세입 및 결산상의 잉여금 등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그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된 기금을 회수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,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점에 비추어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